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공	무	원	금
연	금	기	금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개 황	1
II.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개요	2
1. 일반회계	2
가. 세 입	2
나. 세 출	3
(1) 총 괄	3
(2) 전 용	4
(3) 이 용	4
(4) 이 월	5
(5) 불 용	5
(6) 성인지 결산	6
2. 공무원연금기금	7
가. 일반현황	7
나. 자금 조달 및 운용	7
다. 재무상태	9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10
3. 예비비	11
4. 재무결산	11
가. 재정상태 분석	11

나. 재정운영 분석	13
다. 순자산변동 분석	15
Ⅲ. 검토의견	18
[일반회계]	
<수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18
가. 개 요	18
나. 우수 인재 확보 및 저연차 공무원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9
<지 출>	
2.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	23
가. 개 요	23
나. 개방형직위의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24
3. 기관운영(총액)(7011-200)	31
가. 개 요	31
나. 청년인턴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32
4. 교육과정 운영(2133-300)	38
가. 개 요	38
나.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이용(移用) 지양 필요	39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5. 퇴직급여(3031-311)	43
가. 개 요	43
나. 퇴직급여 계획 및 변경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44
6. 공무원연금대부(융자)(3142-322)	48
가. 개 요	48
나.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을 위하여 사업 규모 확대 필요	49
7. 복지시설운영(3161-341)	53
가. 개 요	53
나. 후생복지시설 사업 다양화 필요	54
8. 지부시설관리(3161-342)	58
가. 개 요	58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 필요	59
9. 보유시설개보수(3261-412)	64
가. 개 요	64
나.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편성 및 집행 필요	65
10. 기금관리비(3576-201)	68
가. 개 요	68
나. 정상적 성격의 경비 절감 및 자산의 효율적 운용 필요	69

I. 개 황

□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회계는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이 있음.

□ 먼저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액은 19조 9,650억 5,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8%임¹⁾.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결산(B)	예산 대비 (B-A)	예산액 대비 수납률(B/A)
	본예산	추경(A)			
총수입	19,806,538	19,806,538	19,965,052	158,514	100.8
예 산	5,962	5,962	6,306	344	105.8
기 금	19,800,576	19,800,576	19,958,746	158,170	100.8

□ 다음으로,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25조 2,747억 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임.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결산(B)	예산 대비 (B-A)	예산액 대비 집행률(B/A)
	본예산	추경(A)			
총지출	24,702,471	25,416,028	25,274,701	△141,327	99.4
예 산	209,214	209,214	203,483	△5,731	97.3
기 금	24,493,257	25,206,814	25,071,218	△135,596	99.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Ⅱ.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9억 6,200만원이며, 63억 8,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3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7,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비해 3억 4,400만원 많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재 산 수 입	4	6	6	-	-	2
경상이전수입	748	1,326	1,247	-	79	49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423	967	967	-	-	△456
수입대체경비수입	3,787	4,087	4,087	-	-	300
합 계	5,962	6,385	6,306	-	79	344

나. 세 출

(1) 총 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5조 1,170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포함한 5조 1,170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조 1,112억 7,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7억 9,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 자체 지출	209,214	66	-	±376	±242	209,280	203,482	-	5,798	97.2	2.8
- 인재채용	20,901	-	-	±240	-	20,901	20,441	-	460	97.8	2.2
- 인재개발	43,182	-	-	-	-	43,182	43,104	-	78	99.8	0.2
- 공직신뢰구현	2,989	-	-	-	-	2,989	2,958	-	31	99.0	1.0
- 인사혁신확산	31,199	-	-	-	-	31,199	31,063	-	136	99.6	0.4
- 공무원후생복지	6,803	-	-	-	-	6,803	6,593	-	210	96.9	3.1
- 국가인재교육운영	16,631	-	-	-	△242	16,389	16,033	-	356	97.8	2.2
- 인사혁신행정지원	87,509	66	-	±136	242	87,817	83,290	-	4,527	94.8	5.2
• 회계기금간 거래	4,907,795	-	-	-	-	4,907,795	4,907,795	-	-	100.0	-
- 공무원기금전출	4,907,795	-	-	-	-	4,907,795	4,907,795	-	-	100.0	-
합 계	5,117,009	66	-	±376	±242	5,117,075	5,111,278	-	5,798	99.9	0.1

(2) 전 용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한 전용액은 3억 7,600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인건비 부족 1억 2,1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3,000만원, 기타 2억 2,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376	
1. 인건비 부족	121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
2. 사업량 증가	30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3.3월) 후 여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225	감리사업 및 보험료 재원 마련

(3) 이 용

-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이용액은 2억 4,200만원으로, 이용 사유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부족임.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242	
기관운영 필수 경비 부족	24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공요금(전기, 가스) 예산 부족

(4) 이 월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5) 불 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5조 1,170억 7,500만원)의 0.1%인 57억 9,80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인건비 잔액 39억 7,000만원, 집행잔액 18억 2,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5,798	
1. 인건비 잔액	3,970	정원·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잔액
2. 집행잔액	1,828	계약 낙찰차액,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등

(6) 성인지 결산

- 2023년 성인지 예산은 ‘인적자원 역량 개발 및 강화를 통한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2개 사업에 예산 36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378억 700만원) 대비 100%인 378억 500만원이며, 다
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합 계	36,841	37,807	37,805	-	2
공무원인재개발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33,256	34,464	34,464	-	-
교육과정 운영	3,585	3,343	3,341	-	2

2. 공무원연금기금

가. 일반현황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기금 증식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음.

나. 자금 조달 및 운용

- 2023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27조 3,924억 8,5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조 5,583억 4,000만원(△5.4%) 감소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보수예산의 계획대비 감소로 인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수입 감소, 기존 보유 우량 주식·채권 등 보유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기여금(공무원 본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지자체) 등 자체수입이 19조 9,587억 4,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국가) 등 정부내부수입이 5조 6,341억 1,600만원, 여유자금 회수가 1조 7,996억 2,3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27조 3,924억 8,500만원임.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지출 25조 26억 1,300만원, 기금운영비 686억 500만원, 정부내부지출 117억 9,800만원, 여유자금운용액 2조 3,094억 6,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19,800,576	19,958,746	100.8
	정부내부수입	5,649,088	5,634,116	99.7
	여유자금회수	3,501,161	1,799,623	51.4
	합 계	28,950,825	27,392,485	94.6
기금의 운용	사업비	25,134,143	25,002,613	99.5
	기금운영비	72,548	68,605	94.6
	정부내부지출	11,798	11,798	100.0
	차입금이자상환	123	-	-
	여유자금운용	3,732,213	2,309,469	61.9
	합 계	28,950,825	27,392,485	94.6

다. 재무상태

- 2023년도 말 기준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은 21조 3,933억 100만원으로 유동자산은 6,563억 3,400만원 증가하고, 비유동자산이 973억 4,300만원 감소하여 2022년도 말 대비 5,589억 9,100만원 증가함.
- 2023년도 말 기준 부채는 1,037조 9,499억 7,700만원으로 유동부채는 1,851억 4,600만원 감소하였으나, 비유동부채가 45조 8,090억 6,400만원 증가하여 2022년도 말 대비 45조 6,239억 1,800만원 증가함.
- 2023년도 말 순자산총액은 △1,016조 5,566억 7,6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45조 649억 2,7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3년도(A)	2022년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4,466,187	3,809,853	656,334
	비 유 동 자 산	16,927,114	17,024,457	△97,343
	합 계	21,393,301	20,834,310	558,991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1,037,949,977	992,326,059	45,623,918
	(1) 유동부채	1,238,039	1,423,185	△185,146
	(2) 비유동부채	1,036,711,938	990,902,874	45,809,064
	< 순 자 산 >	△1,016,556,676	△971,491,749	△45,064,927
	(1) 기본순자산	4,013,533	4,013,533	-
	(2) 적립금 및 잉여금	△1,025,968,073	△980,373,528	△45,594,545
	(3) 순자산조정	5,397,864	4,868,246	529,618
	합 계	21,393,301	20,834,310	558,991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공무원연금기금은 2023회계연도 총 6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사유는 대여학자금 대부건수 증가로 인한 예산 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책연구비 예산 확보, 명예퇴직 및 일반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증가, 전기료 인상 및 복지시설 정상영업에 따른 복지시설운영 예산 확보,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및 보증금 반환 예산 확보 등임.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세부사업명	당 초(A)	변 경(B)	증 감(B-A)
1	대여학자금융자	446,852	525,571	78,719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41,107	862,388	△78,719
2	기금관리비	10,423	10,423	±35
3	퇴직수당	2,741,776	2,853,776	112,000
	퇴직급여	19,759,680	19,647,680	△112,000
4	복지시설운영	48,427	48,781	354
	지부시설관리	19,514	19,160	△354
5	퇴직급여	19,647,680	20,250,680	603,000
	재해보상급여	196,529	208,229	11,7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796,901	1,182,201	△614,700
6	주택사업관리	412,371	437,171	24,800
	임대주택건립	20,408	15,746	△4,66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862,388	842,250	△20,138

주)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 계획 변경임

3. 예비비

☐ 인사혁신처는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 배정 및 집행액이 없음.

4. 재무결산

☐ 인사혁신처는 일반회계, 공무원연금기금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2023년 말 인사혁신처 자산 총액은 20조 9,590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217억원(3.1%) 증가하였으며, 주로 유동자산 증가(5,524억원) 및 투자자산 증가(4,269억원)에 기인함.

☐ 부채 총액은 1,036조 9,711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45조 6,948억원(4.6%) 증가하였으며, 주로 장기충당부채²⁾ 증가(45조 6,212억원)에 기인함.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016조 121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45조 732억원(4.6%) 감소하였음.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액(C=A-B)	비율(C/B)
I. 자산(a)	20,959,020	20,337,333	621,687	3.1
· 유동자산	4,045,749	3,493,332	552,417	15.8
· 투자자산	9,138,769	8,711,830	426,939	4.9
· 일반유형자산	7,200,821	7,224,288	△ 23,467	△ 0.3
· 무형자산	41,449	46,109	△ 4,660	△ 10.1
· 기타비유동자산	532,232	861,773	△ 329,541	△ 38.2
II. 부채(b)	1,036,971,120	991,276,280	45,694,840	4.6
· 유동부채	1,102,207	1,254,746	△ 152,539	△ 12.2
· 장기차입부채	2,169,070	2,254,926	△ 85,856	△ 3.8
· 장기충당부채	1,032,309,907	986,688,688	45,621,219	4.6
· 기타비유동부채	1,389,936	1,077,920	312,016	28.9
III. 순자산(a-b)	△ 1,016,012,100	△ 970,938,947	△ 45,073,153	△ 4.6
·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	0.0
· 적립금 및 잉여금	△ 1,026,187,477	△ 980,584,716	△ 45,602,761	△ 4.7
· 순자산조정	5,486,470	4,956,862	529,608	10.7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 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서 프로그램 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비용(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과 비배분비용(대손상각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표시하며,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함.

$$\begin{aligned} \text{재정운영결과(국가 사업의 원가 분석)} = & \\ & \text{프로그램 순원가(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 \\ & + \text{관리비용} + \text{비배분비용} \\ & - \text{비배분수익} \\ & - \text{비교환수익} \end{aligned}$$

- 2023년 말 인사혁신처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6조 7,082억원 및 관리운영비 980억원, 비배분비용 593억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3,318억원을 차감한 36조 5,337억원임.
- 2023년 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 36조 5,337억원에서 비교환수익 등 3조 9,193억원을 차감한 32조 6,144억원임.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54조 325억원에서 프로그램수익 17조 3,242억원을 차감한 36조 7,082억원으로, 프로그램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이며 동 프로그램의 총 원가는 53조 6,512억원이고 프로그램수익은 17조 213억원임.
- 둘째,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88억원과 기타경비 292억원을 합산한 980억원임.
- 셋째,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530억원 및 기타비용 63억원 등을 합산한 593억원임.
- 넷째,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705억원, 자산처분이익 413억원, 배당금수익 157억원 및 기타수익 43억원 등을 합산한 3,318억원임.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전액 기금회계 금액으로 기타재원 조달 및 이전 3조 9,193억원임.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I. 프로그램순원가	36,708,203
II. 관리운영비	98,042
III. 비배분비용	59,326
IV. 비배분수익	331,8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533,729
VI. 비교환수익 등	3,919,34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2,614,388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한 해 동안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 순자산(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에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재원의 조달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 재원의 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의미함) 및 조정 항목(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

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text{기말순자산} = \text{기초순자산} - \text{재정운영결과} + \text{재원의 조달 및 이전} + \text{조정 항목}$$

- 인사혁신처의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1,016조 121억원으로, 2023년 기초순자산은 △970조 9,389억원, 재정운영결과 32조 6,144억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조 2,397억원, 조정 항목 △14조 6,985억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5조 1,113억원 및 기타 재원의 조달 23억원 등 5조 1,136억원이 재원의 조달로, 국고이전지출 63억원 및 기타 재원의 이전 2조 8,676억원 등 2조 8,739억원이 재원의 이전으로 계상된 것이며, 조정 항목 △14조 6,985억원은 주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등의 연금보험수리적 손익 변동에 따른 기타순자산증감 △15조 2,281억원과 자산재평가이익 75억원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5,22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임. 이에 따라 기말순자산은 △1,016조 121억 원으로 계상됨.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I. 기초순자산	△970,938,947
II. 재정운영결과	32,614,38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39,719
IV. 조정항목	△14,698,48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16,012,100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Ⅲ. 검토의견

[일반회계]

<수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 우수 인재 확보 및 저연차 공무원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수납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3억 8,900만원 중 9억 5,200만원(68.5%)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389	1,389	-	1,389	952	952	-	-	1,120

나. 우수 인재 확보 및 저연차 공무원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5급·7급·9급)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납액 및 수납률도 감소 추세에 있음.

<최근 3년 응시수수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1,915	1,725	1,389
수납액	1,445	1,229	952
수납률	75.4	71.2	68.5

자료: 인사혁신처

<최근 5년 공무원 직급별 공채·경채 응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급 공채	선발인원	330	320	308	322	305
	출원인원	12,133	11,174	13,396	12,197	10,844
	경쟁률	36.8:1	34.9:1	43.5:1	37.9:1	35.6:1
7급 공채	선발인원	760	755	815	785	720
	출원인원	35,238	34,703	38,947	33,527	29,086
	경쟁률	46.4:1	46.0:1	47.8:1	42.7:1	40.4:1
9급 공채	선발인원	4,987	4,985	5,662	5,672	5,326
	출원인원	195,322	185,203	198,110	165,524	121,526
	경쟁률	39.2:1	37.2:1	35.0:1	29.2:1	22.8:1
민간 경력자 5급	선발인원	80	72	70	68	63
	출원인원	2,337	1,713	1,552	1,129	1,212
	경쟁률	29.2:1	23.8:1	22.2:1	16.6:1	19.2:1
민간 경력자 7급	선발인원	148	175	161	150	135
	출원인원	3,338	4,343	2,135	1,926	2,048
	경쟁률	22.6:1	24.8:1	13.3:1	12.8:1	15.2:1
지역인재 7급	선발인원	140	145	160	165	185
	출원인원	511	481	640	681	495
	경쟁률	3.7:1	3.3:1	4:1	4.1:1	2.7:1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인재 9급	선발인원	210	245	320	380	300
	출원인원	1,041	1,085	1,109	934	811
	경쟁률	5:1	4.4:1	3.5:1	2.5:1	2.7:1
중증장애인	선발인원	31	50	46	61	64
	출원인원	221	324	210	225	200
	경쟁률	7.1:1	6.5:1	4.6:1	3.7:1	3.1:1

자료: 인사혁신처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현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공직 이탈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주요 원인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인 것으로 보임.³⁾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2019년~2023년)>

(단위: 명, 매년 12.31.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일반퇴직자 ¹⁾	6,500	9,009	10,426	13,032	13,568

주: 1) 의원면직·조기퇴직·기간만료 등 포함[정년퇴직·당연퇴직(임용결격 등)·사망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9급(1호봉) 보수(월)는 봉급액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월) 보다 다소 높은 편(약 3% 정도)이지만,⁴⁾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약 83.1%('22년 기준)⁵⁾에 그치는 것으로

3) 서울경제, “인기 시들해진 9급 공무원...32년만에 최저 경쟁률 보니”, 2024.1.25.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9급(1호봉) 보수(월)(A) ³⁾	1,745,240	1,838,030	1,889,830	1,943,210	2,065,690
최저임금(월)(B)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4) B 대비 A(A/B)	1.00	1.02	1.04	1.02	1.03

5)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2022)>

(단위: %)

로 조사됨.

<9급(1호봉) 기준 봉급액 대비 최저임금(2019년~2023년)>

(단위: 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9급(1호봉) 봉급액(월)(A)	1,592,400	1,642,800	1,659,500	1,686,500	1,770,800
최저임금(월)(B)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A 대비 B	1.10	1.09	1.10	1.14	1.14

자료: 인사혁신처

2023년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공무원총조사에서도 민간 대비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 이직 이유 1순위는 ‘낮은 보수수준’(51.2%)으로 ‘과도한 업무량’(9.8%) 및 ‘경직된 조직문화’(8.7%)보다도 현저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보수수준에 대한 공무원의 높은 불만도를 보여줌. 특히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⁶⁾⁷⁾

□ 이에 정부는 2024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하였고,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⁸⁾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구분	일반직	경찰직	교원직	전 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민간=100)	76.0	87.6	86.5	83.1

자료: 인사혁신처, “2022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2022.12.

6) 20대이하(67.9%), 30대(61.9%), 40대(44.1%), 50대이상(27.3%)

7)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통계로 보는 공무원의 공직생활 ‘2023년 공무원총조사’결과 공표”, 2024.4.30.

8)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이슈와 논점, 제2203호, 2024.2.28.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대졸신입 희망 연봉 평균 (3,610만원)⁹⁾에는 못 미치고 있어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보수 현실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 하락은 우수인재 채용 부진에 따른 공무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심화될 경우 국가행정의 공백 및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우수 인재 확보 및 저연차 공무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뉴스투데이, “잡코리아, 2024대졸 신입 희망 연봉 평균 3,610만원”, 2024.1.10.

<지 출>

2.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

- 2023년 개방형직위의 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선발을 위한 관련 예산의 불용이 상당분 발생하였는 바,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하에 개방형직위의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은 중앙부처 개방형직위(과장급 이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액 6억 7,100만원 중 4억 9,600만원(73.9%)이 집행되고, 1억 7,500만원(26.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앙선발 시험위원회 운영	671	671	-	-	-	671	496	-	175	671

나. 개방형직위의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¹⁰⁾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당초 부처 자체적으로 선발하던 개방형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관에서 선발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2014년 7월 출범하였음.

- 2023년도에는 개방형직위 선발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171개→125개 : 46개(26.9%)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¹¹⁾ 회의 및 회의운영 지원을 위한 동 사업 예산집행률도 73.9%

10)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1)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부진한 편이었음.

<개방형직위 선발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회의 현황(2020년~2023년)>

(단위: 개, 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선발 완료한 개방형직위 수 ¹⁾	162	160	171	125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최	195	190	198	147

주: 1) 해당 연도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선발완료(면접시험 → 부처에 임용후보자 추천)한 개방형직위의 수(임용후보자 추천 후, 각 부처별로 인사검증,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 임용)

자료: 인사혁신처

동 사업 예산의 불용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수당’ 내역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 수당 미지급에 따라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3억 9,3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671	671	-	±3	671	496	-	175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시험위원 수당	571	571	-	△3	568	393	-	175
기타운영비(210-16)	571	571	-	△3	568	393	-	175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경비	100	100	-	3	103	103	-	-
일반수용비(210-01)	26	26	-	3	29	29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	-	4	4	-	-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관리용역비(210-15)	32	32	-	-	32	32	-	-
국내여비(220-01)	20	20	-	-	20	20	-	-
사업추진비(240-01)	18	18	-	-	18	18	-	-

- 2023년 개방형직위 선발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개방형직위의 수가 대폭 줄어든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2023년말 기준 개방형직위의 수는 373개로 전년도 475개 대비 102개(2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2020년~2023년)>

(단위: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	고위공무원단	174	174	174	145
	과장급	295	299	301	228
	소계	469	473	475	373

주: 매년 연도말 현재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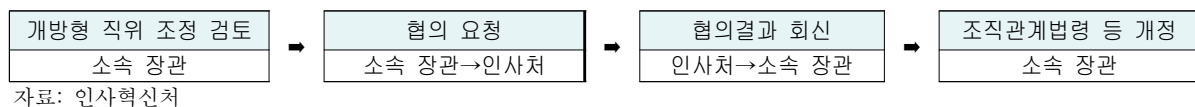
인사혁신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직 내부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거나 민간 인재풀이 협소한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과학기술 및 국제통상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로 신규 지정하는 등 개방형직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방형직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개방형직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¹²⁾

<개방형직위 임기제와 일반 임기제 비교>

구분		개방형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고위)공무원
채용		경력경쟁채용(임용)	
근무기간	국가	5년의 범위(최소 2년 이상)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 기간 + 성과탁월시 연장 가능	5년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 성과탁월 시 5년(최대 10년)
	지방	5년의 범위(최소 2년 이상)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 + 성과탁월시 연장 가능	
채용요건	국가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요건 충족
	지방	관련 분야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등	
시험위원	국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풀(POOL)에서 선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지방	임용권자가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시행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 임명·위촉	
서류전형	국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구성 - 5명 - 자부처 공무원 2명 이내 위촉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2명 이상 위촉 - 1/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 임명·위촉 - 5명 이상의 시험위원 - 시험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면접심사	국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구성 - 5명 - 자부처 공무원 2명 이내 위촉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12) 개방형직위 조정 절차



구분		개방형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고위)공무원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 임명·위촉 - 5명 이상의 시험위원 - 시험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임용	지방	선발시험위원회에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 → 인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용	·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통지 후 임용권자가 임용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그러나, 2023년도에 개방형직위의 수가 다소 급격하게 감소한 측면이 있고, 부처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혁신처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개방형직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운영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의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민간 인재의 풀이 협소하더라도 전문성이 요청되는 직위는 가급적 개방형직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처별로 이루어

지는 자체적인 선발에 비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선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우수한 민간 인재의 영입을 유도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무원 임용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축소·조정하여 부처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늘리기 보다는 이에 앞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개방형직위 선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단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³⁾

- 부처의 인사 자율성 및 적시성 제고 등 신속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방형직위를 조정하는 경우 동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하에 개방형직위의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개방형 직위 지정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 사항
전문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정도를 말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 최신 지식·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하고 해당 직무의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후순위 처리함
민주성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를 말함. 민주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함

13)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공고·원서접수(15일 이상)부터 최종 선발까지 약 8주 정도 소요('23년 기준)되는 반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장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 약 5~6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	고려 사항
변화필요성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나 형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를 말함. 변화필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함
중요성	직무내용이나 성격상 해당 직위의 업무가 해당기관의 전체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직위 업무수행 결과의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함. 부처 내에서 중요성이 높은 직위 중 일부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 포함시킴
조정성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처 간 또는 부서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를 말함. 전문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라 하더라도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인사혁신처, 개방공모직위운영지침

3. 기관운영(총액)(7011-200)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청년인턴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절한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관운영(총액)(7011-200)은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직원 복리후생 지원 등 인사혁신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당초 예산 12억 2,700만원에서 전용을 통해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 13억 4,800만원 중 13억 1,300만원(97.4%)이 집행되고, 3,500만원(2.6%)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총액)	1,227	1,227	-	121	-	1,348	1,313	-	35	1,252

나. 청년인턴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동 사업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집행하여야 하는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편성·집행되었음.¹⁴⁾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목)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9p

2023년 비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청년인턴제¹⁵⁾를

14)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023.3.

Ⅲ.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방안

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 4)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15)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여 향후 4년간('23년~'26년) 총 1만명 이상 채용할 계획임('23년 2,000명 → '24년 2,500명 → '25년 3,000명 → '26년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인건비(본부)’(7001-100)에 편성된 기타직보수(110-02)에서 1억 2,100만원을 동 사업 일용임금(110-04)에 전용하여 청년인턴 11명을 채용·운영(6개월)하였음.

<2023년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관운영(총액)	1,227	1,227	-	121	-	1,348	1,313	-	35
-상용임금(110-03)	66	66	-	-	-	66	62	-	4
-일용임금(110-04)	1	1	-	121	-	122	120	-	2
-특근매식비(210-05)	13	13	-	△8	-	6	6	-	-
-일·숙직비(210-06)	19	19	-	3	-	22	22	-	-
-복리후생비(210-12)	665	665	-	-	-	665	650	-	15
-기타운영비(210-16)	84	84	-	5	-	89	88	-	1
-직책수행경비(250-02)	320	320	-	-	-	320	313	-	7
-특정업무경비(250-03)	1	1	-	-	-	1	1	-	-
-고용부담금(320-09)	57	57	-	-	-	57	52	-	5
합 계	1,227	1,227	-	121	-	1,348	1,313	-	35

□ 청년이 정부 부처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이 2023년 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되면서 중앙 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3년 예산에는 청년인턴 채용 예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각 부처에서는 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¹⁶⁾

4,000명),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2023.1.)

16)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2024. 7월, 454p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청년의 실질적 일자리 경험 제공 청년층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
채용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34세)
채용 규모	(2023) 2천명, (2023~2026) 총 1만명
채용 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정
채용 기관	45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검찰청 제외)
업무	전공·관심직종 등을 고려한 실무 분야
급여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2024. 7월, 450p

<2023년~2024년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			2024.5.	
	채용 계획 (A)	채용 인원 (B)	채용 실적 (B/A)	채용 계획	채용 인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3	100.0	5	5
경찰청	200	140	70.0	300	267
고용노동부	96	100	104.2	229	244
공정거래위원회	13	13	100.0	20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	39	78.0	210	84
관세청	73	74	101.4	193	141
교육부	50	47	94.0	265	206
국가보훈부	25	22	88.0	75	33
국가유산청	20	20	100.0	32	2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	16	106.7	35	35
국방부	20	20	100.0	71	34
국세청	200	190	95.0	300	296
국토교통부	82	82	100.0	233	153
국민권익위원회	19	6	31.6	9	5
금융위원회	6	6	100.0	25	25
기상청	29	29	100.0	42	-
기획재정부	22	22	100.0	40	39
농림축산식품부	75	78	104.0	190	114

(단위: 명, %)

구분	2023			2024.5.	
	채용 계획 (A)	채용 인원 (B)	채용 실적 (B/A)	채용 계획	채용 인원
농촌진흥청	24	22	91.7	30	26
대법원	44	44	100.0	44	44
문화체육관광부	60	57	95.0	176	141
방위사업청	25	25	100.0	33	-
방송통신위원회	-	-	-	9	8
법무부	200	220	110.0	300	225
법제처	4	4	100.0	6	3
병무청	26	28	107.7	27	25
보건복지부	52	43	82.7	160	75
산림청	36	38	105.6	45	26
산업통상자원부	28	28	100.0	92	21
새만금개발청	2	2	100.0	3	-
소방청	14	13	92.9	18	18
식품의약품안전처	40	40	100.0	105	79
여성가족부	6	5	83.3	9	6
외교부	20	20	100.0	110	69
원자력안전위원회	4	4	100.0	6	4
인사혁신처	12	11	91.7	18	5
조달청	22	24	109.1	33	23
중소벤처기업부	28	28	100.0	118	71
질병관리청	34	34	100.0	44	30
통계청	36	36	100.0	95	57
통일부	12	12	100.0	40	40
특허청	48	40	83.3	49	26
해양수산부	86	87	101.2	244	133
해양경찰청	102	100	98.0	218	17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	100.0	3	3
행정안전부	78	71	91.0	223	113
환경부	54	54	100.0	160	115
합계	2,097	1,999	95.3	4,591	3,2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2024. 7월, p452

□ 청년에게 국정운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청년인턴제의 목적
 및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 전용 시 사업 간 유사성,

시급성, 필수적 경비 충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¹⁷⁾을 고려하건대, 2023년 ‘인건비(본부)’(7001-100)에서 전용을 통해 청년인턴제를 추진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임.

특히,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¹⁸⁾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편성되지 아니한 청년 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본부)(7001-100) → 기관운영(총액)(7011-200)으로 예산을 전용·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정부가 '23년~'26년까지 4개년에 걸쳐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청년인턴제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으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에서 소요 예산 및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봄.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청년인턴 채용을 위하여 세부사

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생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업 ‘행정효율성 제고 및 역량개발’(7033-302)에 일용임금(110-04)
2억 2,100만원(18명)을 편성하였음.

4. 교육과정 운영(2133-300)

- 공무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이용(移用)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교육과정 운영(2133-300)은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 35억 8,500만원에서 이용을 통해 2억 4,200만원이 감액된 예산현액 33억 4,300만원 중 33억 4,100만원(99.9%)이 집행되고, 200만원(0.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육과정 운영	3,585	3,585	-	△242	-	3,343	3,341	-	2	4,023

나.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이용(移用) 지양 필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본원 : 충북 진천, 분원 : 경기 과천 소재)은 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신임관리자과정(공채, 경채) 및 신규 채용자과정(7급·9급) 등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¹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교육 과정의 특성과 대규모 집합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한계²⁰⁾ 등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교차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총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임관리자과정(공채)은 전체 17주 교육기간 중 온라인 교육이 8주에 걸쳐 실시되었음.

19)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2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져 기숙사(최대 수용인원: 475명) 이용자가 집중될 경우 집합교육 동시 운영이 불가함.

< '23년 교육과정별 온·오프라인 교육 현황 >

과정명		온-오프 교육 현황
•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집합(2주) → 온라인(3주) → 집합(4주)
•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집합(2주) → 온·오프(1주) → 온라인(6주) → 집합(4주) → 온라인(2주) → 집합(2주)
• 5급 승진 관리자과정	170기, 172~174기	집합(3주) → 온라인(3주)
	171기	온라인(1주) → 집합(4주) → 온라인(3주)
• 7급 신규자과정		집합(1주) → 온라인(2주) → 집합(2주)
• 7급 신규자과정(지역인재)		집합(3주) → 온라인(2주)
• 9급 신규자과정		집합(2주) → 온라인(2주)
• 9급 신규자과정(지역인재)		집합(2주) → 온라인(2주)

자료: 인사혁신처

아울러, 2023년 세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사업 ‘신임관리자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2억 3,700만원을 세부사업 ‘국가인재원 기본경비’(7018-250)에 계상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부족분(2억 4,200만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移用)하였는바, 기본경비 부족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3년 교육과정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임관리자과정운영	1,505	1,505	-	△237	-	1,268	1,268	-	-
•5급승진관리자과정운영	658	658	-	△1	-	657	657	-	-
•6급이하과정운영	312	312	-	△3	-	309	309	-	-
•신임국·과장과정운영	282	282	-	-	-	282	281	-	1
•고공단·과장후보자과정운영	478	478	-	-	-	478	478	-	-
•국정시책·공직가치과정운영	153	153	-	△1	-	152	152	-	-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육생서틀버스운행	197	197	-	-	-	197	196	-	1
합 계	3,585	3,585	-	△242	-	3,343	3,341	-	2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21)에 따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부족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이용·집행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신임관리자과정의 일부 기간 온라인 교육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집합교육 관련 예산 절감분을 이용하였는 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교육과정 예산을 감액하여 기본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특히,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 재원의 97.9%에 해당하는 재원(2억 3,700만원)이 세사업 ‘신임관리자과정’ 운영 예산의 절감분으로 조직내 소통과 협업 및 다양한 이해·갈등 조정자

21)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신입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입관리자(5급) 교육과정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이용 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함.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국가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무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교육시설(기숙사, 식당 등) 부족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교차·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5. 퇴직급여(3031-311)

○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퇴직자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퇴직급여 사업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19조 7,596억 8,0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4,910억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계획현액 20조 2,506억 8,000만원 중 20조 1,373억 3,100만원(99.4%)이 집행되고 1,133억 4,900만원(0.6%)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퇴직급여	19,759,680	20,250,680		20,250,680	20,137,331		113,349	21,945,761

나. 퇴직급여 계획 및 변경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공무원연금법」 제28조²²⁾는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① 퇴직급여, ② 퇴직유족급여, ③ 비공무상 장해급여 및 ④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퇴직수당을 제외한 3개 급여(①+②+③)를 지급하는 사업임.

최근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 공무원의 퇴직 증가로 퇴직급여 소요액 증가에 따른 정부보전금의 증가세가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퇴직급여 계획액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정부보전금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전망	2025전망	2026전망	2027전망
정부보전금	44,451	58,766	86,040	87,590	98,480	113,99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2)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 퇴직급여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계획액을 편성·집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동 사업 당초 계획액은 2차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1차에는 퇴직자 증가에 따른 세부 사업 ‘퇴직수당’(3032-312)²³⁾의 부족분에 활용하기 위해 1,120억원을 감액 변경하였고(2023.9.22.), 2차에는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일시금²⁴⁾ 지급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1차와 달리 6,030억원을 증액 변경(2023.11.29.)하였음.

<2023년 계획액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변경액	증감액	비고
제1차 (‘23. 9. 22.)	19,759,680	19,647,680	△112,000	명예·일반퇴직 증가로 퇴직수당 부족분 재원으로 활용
제2차 (‘23.11.29.)	19,647,680	20,250,680	603,000	퇴직자 증가 및 평균연금월액 인상(당초4.7%→집행5.1%, 0.4%p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부족분 발생
합 계	-	-	491,000	-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감액·증액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최대 규모인 1,133억 4,900만원의 불용액²⁵⁾이 발생하였는데, 퇴직자 등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과다하게

23)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5) 최근 4년 불용액: 2,140백만원(2020년) → 41,063백만원(2021년) → 13,820백만원(2022년) → 113,349백만원(2023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임.

공무원연금공단은 계획변경 당시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및 일반퇴직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계획액을 6,030억원 증액하였으나, 실제 퇴직 인원이 추계 대비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함.

<2023년 퇴직자 계획인원 대비 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획인원(A)	퇴직인원(B)	차이(C=B-A)
정년퇴직	19,580	19,890	310
명예퇴직	12,939	15,133	2,194
일반퇴직	16,571	22,140	5,569
합계	49,090	57,163	8,07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기금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²⁶⁾에 따라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²⁷⁾

26)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였으나 불용액이 최근 4년 중 최대 규모로 발생하였는바, 퇴직자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퇴직급여 지급 사업이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공무원의 다양한 퇴직 사유 등으로 퇴직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공무원의 연령대별 인원 및 퇴직 성향과 같은 추가적인 보정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최근 5년 공무원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년평균 증가율
정년퇴직자	17,377	19,338	14,839	20,180	19,890	5.6%
명예퇴직자	10,693	12,721	12,780	13,887	15,133	9.1%
일반퇴직자	11,711	15,260	17,057	20,926	22,140	17.3%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6,663)	(9,258)	(10,693)	(13,321)	(13,823)	(20.0%)
총 퇴직인원	39,781	47,319	44,676	54,993	57,163	9.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6. 공무원연금대부(융자)(3142-322)

-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을 적정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사업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7,500억원 중 7,499억 7,900만원(99.9%)이 집행되고 2,100만원(0.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공무원연금대부 (융자)	750,000	750,000	-	750,000	749,979	-	21	650,000

나.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을 위하여 사업 규모 확대 필요

-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²⁸⁾는 공무원연금기금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를 통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에는 여유자금 또는 주택구입(임차)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과 특별히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일반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 6,000만원, 사회정책적대출 3,000만원) 내에서 기준이자율(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을 적용하여 기금을 대부·운용하였음.

<2023년 연금대부 처리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대부규모	• 연 7천 5백억원												
대부대상 및 배정비율	- 대부대상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대 상</th></tr> <tr> <td>일반대출</td><td>•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td></tr> <tr> <td>주택자금대출</td><td>• 기대부 이력이 있는 자*</td></tr> <tr> <td>사회정책적대출</td><td>* 우선순위 : 직전 대출 상환기간이 오래된 자</td></tr> </table> - 배정비율 <table border="1"> <tr> <th>최초 대부자</th><th>기대부 이력이 있는 자</th></tr> <tr> <td>80%</td><td>20%</td></tr> </table>	구 분	대 상	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주택자금대출	• 기대부 이력이 있는 자*	사회정책적대출	* 우선순위 : 직전 대출 상환기간이 오래된 자	최초 대부자	기대부 이력이 있는 자	80%	20%
구 분	대 상												
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주택자금대출	• 기대부 이력이 있는 자*												
사회정책적대출	* 우선순위 : 직전 대출 상환기간이 오래된 자												
최초 대부자	기대부 이력이 있는 자												
80%	20%												
대부종류	-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 - 주택자금대출(2종) : 주택구입, 주택임차 - 사회정책적대출(9종) : 미취학자녀, 질병휴직, 신혼부부, 육아휴직, 3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공무원요양, 양자입양												

28)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구 분	세 부 내 용				
대부한도	•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2,000	2,000	6,000	3,000
	665~804	1,000	1,000	5,000	1,000
	515~664	500	500	3,000	500
	0~514	대 출 불 가			
대부이율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 공표 분기연동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기준 이자율)				
	• 사회정책적대출 : 연금대부 기준이자율에서 1%p를 인하				
상환기간	•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단위 : 만원)				
	대부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 고	
	500이상 2,000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2,000초과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상환방법	• 매월 보수지급일에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출금이체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출금)				
연체이자	• 연금대부이율의 2배 적용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인증서 로그인 및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필요)				

2023년에는 연금대부 계획액이 최근 5년간 최소 규모에 해당하는 7,500억원으로 편성·집행되었으나, 연금대부시 적용하는 기준이자율 (한국은행 공표 분기연동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상승²⁹⁾으로 운용 수익(935억원)은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보임.

28)

<최근 5년간 연금대부 기준이자율>

(단위: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년	3.64	3.58	3.48	3.12
'20년	3.01	3.00	3.00	3.00
'21년	2.64	2.83	2.91	2.99
'22년	3.46	3.91	4.05	4.52
'23년	5.34	5.47	4.82	4.80

<최근 5년 연금대부 수익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업비	800,000	900,000	950,000	750,000	750,000
대출액	799,919	900,000	948,400	750,000	749,979
대출건수	39,754	38,761	38,385	30,120	34,060
운용수익	51,954	50,900	47,600	70,200	93,500
평균수익률	3.27%	2.98%	2.48%	3.42%	4.5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무원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기준이자율 변동에 따른 운용 수익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대상이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임.

고금리·고물가 시대 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 수요 충족과 「공무원연금법」 제76조³⁰⁾에 따른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부사업의 운용수익을 고려할 때, 사업확대를 통해 기금 증식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23년 연금대부 계획액을 최근 5년 이래 최소 규모로 편성·집행하여 기대 수익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기금 운영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수익 증가에 따라 기금 전입금³¹⁾이 늘어날 경

30)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31) 「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감소할 수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금운용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동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어 보임.

오히려 공무원연금기금 운영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정부 보전금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기금전입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동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인사혁신처훈령)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복지시설운영(3161-341)

- 공무원연금의 기금증식 및 공무원 후생복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복지시설운영 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및 가족의 후생복지 증진과 공무원연금 기금의 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484억 2,7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계획현액 487억 8,100만원 중 485억 2,400만원(99.5%)이 집행되고 2억 5,700만원(0.5%)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복지시설운영	48,427	48,781	-	48,781	48,524	-	257	48,984

나. 후생복지시설 사업 다양화 필요

- 공무원연금기금³²⁾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³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³⁴⁾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용되는데,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는 골프장을 포함한 4개 체육시설(천안상록리조트(숙박시설 포함),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과 1개 숙박시설(수안보상록호텔)이 있음.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천 안 리조트	화 성 골프장	남 원 골프장	김 해 골프장	수안보 호 텔
영업개시	'97. 3. 10.	'06. 11. 3.	'12. 9. 22.	'14. 7.12.	'89. 3.24.
주요시설	대중형골프장 27홀, 호텔 222실, 공원 운영	대중형골프장 27홀	대중형골프장 18홀	대중형골프장 18홀	101개 객실, 온천사우나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32) 「공무원연금법」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 33)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회사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3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중 1989년에 운영을 개시한 수안보상록호텔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숙박시설에 한정된 이용가치로 최근 자구노력에 따라 이용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조하여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및 영업이익(2020년~2023년)>

(단위: 억원, 천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천안리조트	이용인원	298	242	321	401
	공무원	160	145	202	197
	일 반	138	97	120	204
	영업이익	8	20	59	57
화성골프장	이용인원	142	145	150	153
	공무원	95	107	98	100
	일 반	47	38	52	53
	영업이익	75	89	112	107
남원골프장	이용인원	75	92	95	94
	공무원	40	65	62	62
	일 반	35	27	33	32
	영업이익	12	28	42	38
김해골프장	이용인원	95	101	99	102
	공무원	60	71	63	65
	일 반	35	30	36	37
	영업이익	40	47	52	49
수안보호텔	이용인원	20	18	57	62
	공무원	14	11	45	49
	일 반	6	7	12	13
	영업이익	△20	△28	△8	△3

자료: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 II-1, 2024.3. 702p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안보상록호텔의 운영 개선을 위해 은퇴지원 교육(2박3일→3박4일)을 확대³⁵⁾하고, 주변 관광지 연계상품을 운영³⁶⁾하는 등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으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는 못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 및 업무용 자산 중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여 기금 증식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안보상록호텔을 저수익 사업장에 포함하여 매각(처분 추정가격: 230억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공개매각(온비드 시스템) 절차를 진행중³⁷⁾임.

□ 기금운용 및 공무원후생복지 측면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시설을 매각하여 기금증식에 활용하려는 결정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수안보상록호텔 종사자의 고용 승계 문제 등 매각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자산 매각을 통한 기금 증식을 도모하는 한편 후생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35) <은퇴지원교육 운영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천 안			수 안 보			계		
	교 육		매출액	교 육		매출액	교 육		매출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3년	64	5,680	1,666	95	5,921	1,854	159	11,601	3,520
'22년	38	3,220	920	103	6,501	1,734	141	9,721	2,654
증감	26	2,460	746	△8	△580	120	18	1,880	866

36) 소상공인 염색체험, 충주호 유람선 입장권 수탁판매, 화장품 수탁판매, 호텔 침구류 자체 브랜드(더 상록 리빙) 개발

37) <수안보상록호텔 매각 추진일정>

- 이사회 상정 및 의결: '24. 1.26.
- 인사혁신처 승인 및 매각가격결정: '24. 2~3월
- 공개매각(온비드 시스템): '24. 4.1 ~ 5.7. *개찰:5.8

후생복지시설의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⁸⁾

특히, 골프장 위주 체육시설로 제한된 복지시설의 운영은 복지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인 바, 중장기적으로 128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이용도 및 기금증식 사업으로써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안보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8. 지부시설관리(3161-342)

-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연도에 납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부시설관리 사업은 공단이 소유한 청사 및 지부 사무실(7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195억 1,400만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변경된 계획현액 191억 6,000만원 중 186억 7,900만원(97.5%)이 집행되고 4억 8,100만원(2.5%)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계획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지부시설 관리	19,514	19,160	-	19,160	18,679	-	481	22,956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 필요

-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 운영을 위하여 서울상록회관(연면적 44,731 m², 지상17층, 지하3층)·제주청사(연면적 14,674m², 지상6층, 지하1층) 및 7개 지부³⁹⁾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무실 운영 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2023년에는 당초 계획액 125억 1,300만원에서 2억 4,500만원 감액된 계획현액 122억 6,800만원 중 122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지부시설관리	19,514	19,160	-	19,160	18,679	-	481
-일반수용비(210-01)	836	706	-	706	614	-	9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513	12,268	-	12,268	12,209	-	59
-임차료(210-07)	1,111	977	-	977	900	-	77
-유류비(210-08)	178	209	-	209	208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46	874	-	874	849	-	25
-일반용역비(210-14)	85	77	-	77	53	-	24
-관리용역비(210-15)	3,335	3,252	-	3,252	3,147	-	105
-일반연구비(260-01)	200	187	-	187	187	-	-
-반환금및손실금(710-03)	610	610	-	610	512	-	98
합 계	19,514	19,160	-	19,160	18,679	-	481

39) 2023년 기준, 부산-세종-대전-광주-강원-전북-제주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청사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집행되었는데, 2023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75억 9,600만원 중 52억 2,600만원이 당해연도에 납부되었음.

<2023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⁴⁰⁾>

(단위 : 백만원)

구분	고지액	납부액	비고
재산세	2,744	2,744	
종합부동산세	7,596	5,226	미납액 2,370백만원은 2차 분납 완료('24.3월)
계	10,340	7,97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⁴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바, 공단은 당해 회계연도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중 23억 7,0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분납 처리한 것으로 설명함.

40) 재산세는 해당 과세물건이 귀속되는 사업에서 집행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 유형별(종합합산, 별도합산 등) 합계액의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부시설관리'에서 전액 집행

<재산세 대상 건축물 및 귀속 사업명>

- (주택사업관리) 각 지부 임대주택 및 상가
- (복지시설운영) 상록 골프장, 상록 호텔 등 공단 운영 복지시설
- (지부시설관리) 서울회관, 제주청사 등 보유자산

41)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국가재정법」 제2조 및 제3조⁴²⁾에 따라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청사 및 건축물 등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⁴³⁾에 따른 기금으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여야 함.

공무원연금공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일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다음연도에 분납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일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연례적으로 분납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2)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3) 「공무원연금법」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고세액	납부연도	납부세액	분납여부
2019년	8,338	2019년	8,338	-
2020년	6,104	2020년	6,061	1차 납부
		2021년	43	2차 분납
2021년	6,831	2021년	6,727	1차 납부
		2022년	104	2차 분납
2022년	8,114	2022년	6,414	1차 납부
		2023년	1,700	2차 분납
2023년	7,596	2023년	5,226	1차 납부
		2024년	2,370	2차 분납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특히, 2023년에는 당해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완납하기에도 부족한 동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계획액 2억 4,500만원을 감액·변경하여 다른 사업 경비에 충당함으로써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미납분이 증가하였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3. 10. 23.)	△31	제주청사 시설유지비 부족 예산 조정
자체변경 (‘23. 11. 17.)	△185	퇴직급여,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3. 11. 21.)	9	세종대전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 조정
자체변경 (‘23. 11. 21.)	△33	강원지부 사무실 원상복구 등 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 조정
자체변경 (‘23. 11. 21.)	△4	서울회관 연료비 지급을 위한 예산 조정
합 계	△245	-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당해연도 수입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9. 보유시설개보수(3261-412)

- 보유시설의 개보수는 시설의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보유시설개보수 사업은 공무원 임대주택, 복지시설 및 상록회관 등 보유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101억 600만원 중 96억 4,200만원(95.4%)이 집행되고 4억 6,400만원(4.6%)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계획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보유시설개보수	10,106	10,106	-	10,106	9,642	-	464	9,814

나.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편성 및 집행 필요

-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6호44)에 따라 기금은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해 운용하여야 함.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시설⁴⁵⁾에는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이 있는데, 세사업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은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시설의 원활한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개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3회계연도 세사업·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시설	7,738	7,661	-	7,661	7,376	-	285
- 공사비(420-03)	3,044	2,970	-	2,970	2,755	-	215
- 자산취득비(430-01)	4,694	4,691	-	4,691	4,621	-	70
임대주택	1,281	1,307	-	1,307	1,271	-	36

44)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45)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공사비(420-03)	876	896	-	896	886	-	10
- 자산취득비(430-01)	405	411	-	411	385	-	26
회관시설	1,087	1,138	-	1,138	995	-	143
- 공사비(420-03)	523	577	-	577	544	-	33
- 자산취득비(430-01)	564	561	-	561	451	-	110
합 계	10,106	10,106	-	10,106	9,642	-	464

□ 다만, 동 사업에 편성된 세사업 ‘회관시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용하는 청사(서울, 제주)의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과는 사업목적이 다른바, 세사업 ‘회관시설’을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과 통합하여 동 사업에 편성·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특히, ‘임대주택’에 편성된 공사비(420-03)에서 집행한 사택 재건축 분담금(부산 남천자이)은 직원용 사택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8,500만원)으로 세사업 ‘임대주택’의 목적물과는 그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세사업 ‘임대주택’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공단 직원용 사택 재건축분담금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분담금 납부액	85,017,000	55,925,650	56,137,610	85,017,000	282,097,26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운용을 위하여 보유시설의 운용 목적에 맞게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시설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용·수익하는 시설을 구분하고, 해당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세사업은 사업목적에 맞는 적절한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사용하는 청사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세부사업 ‘지부시설관리(3161-342)’와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576-201)’가 별도 편성·집행되고 있음.

10. 기금관리비(3576-201)

-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국가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비목에 맞게 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금관리비 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공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104억 2,300만원 중 99억 200만원(95.0%)이 집행되고 5억 2,100만원(5.0%)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계획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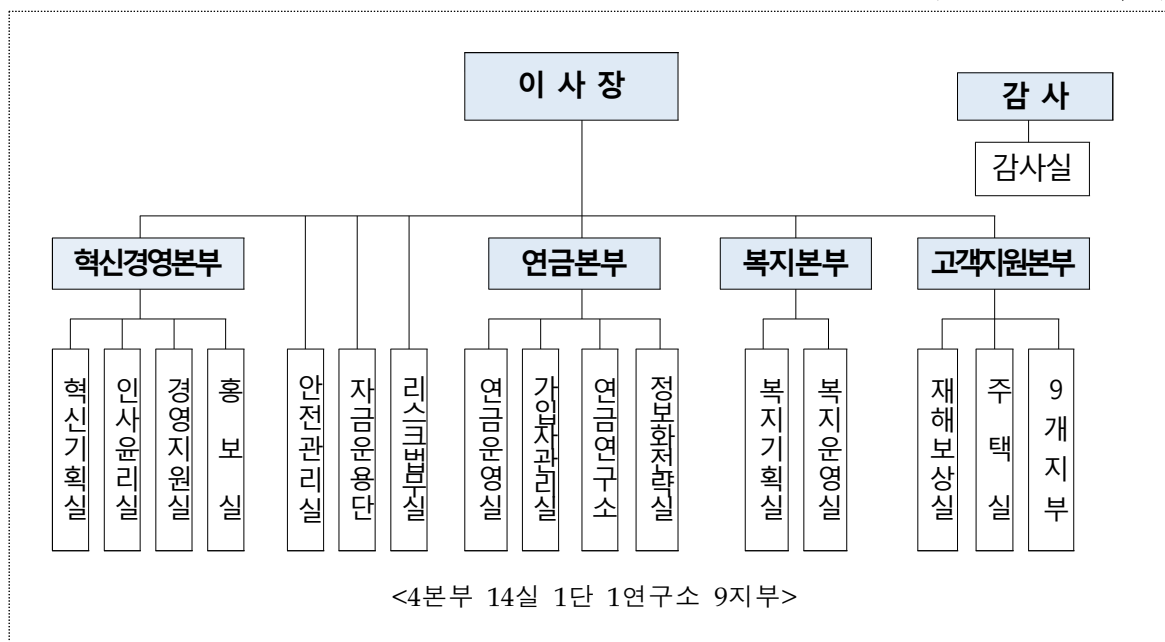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기금관리비	10,423	10,423	-	10,423	9,902	-	521	10,264

나. 정상적 성격의 경비 절감 및 자산의 효율적 운용 필요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 및 제5조⁴⁶⁾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4본부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23.12.31 기준)로 구성되어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조직>

('23. 12. 31. 기준)



※ 부서별 소재지(지부 제외)

(제주) 혁신경영본부, 연금본부, 복지본부, 안전관리실, 감사실

(서울) 자금운용단, 리스크범무실, 재해보상실, 주택실

※ 9개 지부 : 서울, 경인, 부산, 세종·대전, 광주, 대구, 강원, 전북, 제주

46) 「공무원연금법」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⁴⁷⁾에서 규정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⁴⁸⁾

아울러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정상적 성격의 경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달리 부적절하게 집행된 비목이 확인됨.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별표 2] <개정 2021. 12. 21.>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3. 공무원연금법

48)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기금관리비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기금관리비	10,423	10,423	-	10,423	9,902	-	521	10,264
- 일반수용비(210-01)	3,010	2,976	-	2,976	2,895	-	81	2,74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40	1,356	-	1,356	1,302	-	54	1,151
- 피복비(210-03)	22	7	-	7	8	-	-1	23
- 특근매식비(210-05)	363	363	-	363	361	-	2	363
- 임차료(210-07)	179	178	-	178	165	-	13	168
- 유류비(210-08)	30	30	-	30	22	-	8	2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	17	-	17	14	-	3	15
- 복리후생비(210-12)	1,196	1,196	-	1,196	1,195	-	1	1,196
- 일반용역비(210-14)	378	378	-	378	364	-	14	350
- 기타운영비(210-16)	164	164	-	164	162	-	2	163
- 국내여비(220-01)	663	693	-	693	693	-	0	630
- 국외업무여비(220-02)	66	42	-	42	39	-	3	66
- 국외교육여비(220-03)	43	37	-	37	38	-	-1	43
- 사업추진비(240-01)	141	141	-	141	130	-	11	134
- 직책수행경비(250-02)	166	166	-	166	149	-	17	166
- 일반연구비(260-01)	140	130	-	130	124	-	6	140
- 정책연구비(260-02)	164	209	-	209	203	-	6	144
- 포상금(310-03)	90	90	-	90	83	-	7	90
- 자산취득비(430-01)	250	250	-	250	249	-	1	200
- 무형자산(440-00)	2,000	2,000	-	2,000	1,706	-	294	2,450
합 계	10,423	10,423	-	10,423	9,902	-	521	10,264

- 첫째, 포상금(310-03)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또는 기관)에게 격려·포상을 위한 상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장 이외 산하관서장은 포상금 및 기관포상금을 별도 계상할 수 없고, 불가피할 경우 관서별 업무추진비에 반영하여 집행

하여야 하며,⁴⁹⁾ 포상금(310-03)을 집행할 경우에는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⁵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포상금을 별도 계상할 수 없음에도 포상금(310-03) 계획액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규정⁵¹⁾에 의해 집행한 예산성과금 및 승소포상금을 제외하고 5,763만원(64.0%)을 지급근거나 지급한도 없이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

<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원)

내역(건수)	집행액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49건)	42,090,400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상품권 구매 등(39건)	15,544,450
합계	57,634,85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49)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1~p233

5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96~p197

51) 「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심의·의결사항) ② 제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예산성과금 등급(S~D) 결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② 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산성과금 신청에 대하여 예산관리 부서는 금액의 타당성 등 사전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심의회에서 별표 2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위원의 평점을 산술평균한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제안심의회에 상정한다.

「승소포상금 규정」

제46조(소송수행직원에 대한 수당 등) 소송수행직원 및 사내변호사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한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둘째, 무형자산(440-00)⁵²⁾은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지출을 위해 편성·집행하는 비목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⁵³⁾과 학자 대여금을 무형자산(440-00)에 편성·집행하고,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상환액은 ‘기타 잡수입’(13-69-691)에 계상 처리하고 있음.

‘기타 잡수입’(13-69-691)에는 공단 직원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및 학자 대여금 상환 외에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 수입과 연금지 광고료 및 구독료 등 사업 수입이 함께 계상되어 있는데, 투명한 기금의 수입 운용 측면에서 직원 주택 임차보증금 및 학자 대여금 상환액을 ‘기타 잡수입’(13-69-691)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셋째, 공무원연금공단은 본부(제주) 및 지부(부산, 광주)에 총 11세대 사택을 직접 보유 및 임차 중으로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보유 사택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임차한 사택(임원용, 제주2세대)의 미사용으로 인한 공실기간의 장기화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52)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79

53) <사택자금 대여한도>

구 분	사 택	사택자금
임원	독채 입주	해당 없음
부양가족 동반 부임직원	독채 입주	7,000만원 이내
단신 부임직원	독채 입주 또는 2인 이상 합숙	6,000만원 이내

〈사택 보유 및 임차 현황〉

구분		단지명	거주자	공실 발생 시기	처분 계획
보유	부산 (직원 사택)	남천 자이	공실	'17. 12월	▪ 매각 완료('24.6월)
		삼익 비치	공실	'23. 3월	▪ '23년부터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 등을 통한 매각 7회 진행 ▪ 공개매각 및 수의매각 지속 추진
			공실	'23. 6월	
	광주 (직원 사택)	염주 현대	공실	'24. 1월	▪ '23년부터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 등을 통한 매각 6회 진행 ▪ 공개매각 및 수의매각 지속 추진 ▪ 감정평가 유효기간 만료 시 재감정 평가 실시('24. 9월)
		쌍촌 시영	직원	-	
			직원	-	
임차	제주 (임원 사택)	유승 한내들	이사장	-	▪ 임원 사택으로 지속 임차
		중흥 S클래스	상임이사	-	
		대림 서호	상임이사	-	
		서호 현대맨션	공실	'23. 11월	▪ 중도 계약 해지 요구 ※ 제주 출신 임원 임명에 따라 사택 미제공
		동남 서호	공실	'23. 12월	

※ 부산 지역 사택은 재건축 예정(삼익비치)으로 공실 운영중임

□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및 정부 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국가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비목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여야 함.

특히, 포상금은 필요한 경우 지급근거나 지급한도에 대한 명확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서별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고, 투명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직원 주택 임차보증금 및 학자 대여금 상환액은 적절한 비목에 편성하여 수입 처리하며, 직원 사택의 공실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하도록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